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정성희 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

- 최근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
 - 또한, 병사의 건강관리 관심 증가 및 의료선택권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함
 -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 병원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함
-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민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과 가족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경우에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018년 312억 원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5%의 증가 추세를 보임
 - 현역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함
 - 현재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병사 대상의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미운영 중임
-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병사 군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함
 - (가입 대상)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및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함(2020년 기준 37만 명)
 - (보장 범위)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 제도가 국방부 자체 운영 중으로,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 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함
 - (면책 사항) 실손의료보험 면책 사항 중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은 보상하는 항목으로 편입함
 - (운영 방안)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 매년 입찰방식 통해 입찰에 응모한 보험회사 권 소시업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함
- 상기와 같이 도입 방안에 따라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 9,000~9만 8,000원, 연간 예산은 78~24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 및 면책 사항 보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고려할 때, 일반 병사의 연간 보험료는 6만 4,000원, 직무상 선박 탑승 현역병의 경우 9만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됨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으로 병사 중 87%(실손 가입자 중 80%)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연간 예산 소요액은 209억 원 수준으로 산출됨

1.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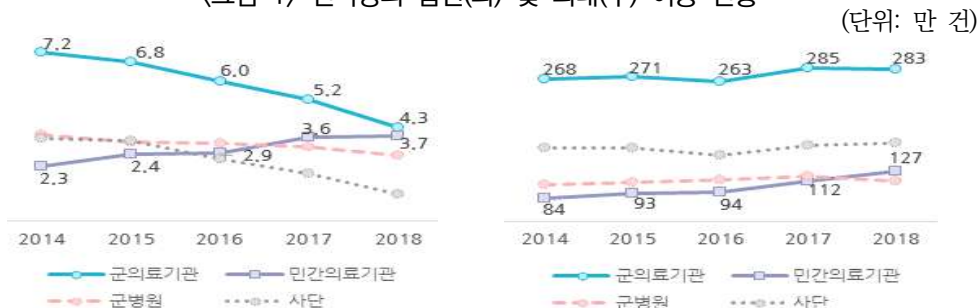
- 현역병이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문 의료인력 부족, 군 병원의 오랜 대기시간 등의 이유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¹⁾가 발생하면서,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됨
- 최근 외출·외박 자율화 허용, 위수지역 폐지 등 현역병의 군 생활 개선 방향 추세에 맞춰 민간의료 이용 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은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민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병사의 건강관리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 선택권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현역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함

〈그림 1〉 현역병의 입원(좌) 및 외래(우) 이용 현황



-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 본인의 희망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²⁾하고,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를 보험연구원에 의뢰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단체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병사 대상의 군 단체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금액 및 도입 효과 추정, 관련 법제도 개정 및 실행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것임

- 본고에서는 상기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에 제안한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소개함

1) 급성 백혈병 증세를 보이던 일병이 초기에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보도됨 (2018년 6월, '그것이 알고 싶다')
 2) 국방부 보도자료(2018. 12),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2. 병사 의료이용 및 단체보험 현황



가. 병사 의료이용 현황

■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치료비 지원은 군 병원의 치료가능 여부에 따라 상이함(표 1) 참조

-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불가능한 사유로 민간 병원 이용 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과 위탁진료비)하며,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본인 선택으로 민간 병원 이용 시,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함
 - 현역병 건강보험제도는 병사가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군 복무 중에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함³⁾
 - 위탁진료비 제도는 1995년에 도입되었는데, 군 진료 능력이 초과되는 환자나 상급병원으로 후송 중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 등을 민간 병원에 위탁하여 진료 후 청구된 비용을 모두 지원함⁴⁾

〈표 1〉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국방부 의료비 지원 제도

구분	진료수준 (중증도 기준)	전공상 (국가책임 기준)	민간 의료	
			보험자 부담금	본인 부담금
현역병 (국민건강 보험 미가입자)	군에서 진료 가능	구분 없음	군 의무사업 예산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현역병 본인부담
	군에서 진료 불가능		군 의무사업 예산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군 의무사업 예산 (위탁진료비)
직업군인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	군에서 진료 가능	전공상 무	국민건강보험	직업군인 본인부담
		전공상 유	군 의무사업 예산 (공무상 요양비)	
	군에서 진료 불가능	전공상 무	국민건강보험	직업군인 본인부담
		전공상 유	군 의무사업 예산 (공무상 요양비)	군 의무사업 예산 (공무상 요양비)

주: 주황색 네모 표시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영역임

- 3) 병사는 민간 의료기관 치료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제출함.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국방부가 미리 예치해 놓은 공단부담금을 민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방부와 사후 정산함
- 4) 위탁진료는 환자의 치료가 주목적인 위탁치료와 환자 진단을 위한 위탁검사로 구분됨

■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2004년 현역병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임(〈표 2〉 참조)

-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군 병원 치료 가능 및 불가능 모두 포함)은 2018년 745억 원으로 연평균 12.8% 증가하고 있음
 - 외래(14.2%)가 입원(12.5%)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임
-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경우에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를 이용함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018년 312억 원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5%의 증가 추세를 보임
 - 입원(17.9%)이 외래(14.1%)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임

〈표 2〉 병사의 건강보험부담금(좌) 및 본인부담금(우)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520.0 (100)	529.9 (100)	668.7 (100)	745.4 (100)	12.8	전체	205.5 (100)	211.3 (100)	275.0 (100)	311.6 (100)	14.9
외래	184.8 (35.5)	193.2 (36.5)	236.5 (35.4)	275.5 (37.0)	14.2	외래	106.6 (51.9)	111.6 (52.8)	137.0 (49.8)	158.2 (50.8)	14.1
입원	277.3 (53.3)	279.5 (52.7)	363.5 (54.4)	395.2 (53.0)	12.5	입원	74.1 (36.1)	75.3 (35.6)	108.6 (39.5)	121.4 (39.0)	17.9
약국	58.0 (11.2)	57.2 (10.8)	68.7 (10.3)	74.7 (10.0)	8.8	약국	24.8 (12.1)	24.4 (11.5)	29.4 (10.7)	32.0 (10.3)	8.9

주: 괄호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방부, 「민간요양기관 진료내역 통계(2015~2018년)」

■ 병사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⁵⁾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로 민간 의료서비스의 높은 만족도가 꼽힘

- 병사가 민간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로 ‘의료수준 뛰어나서(19.3%)’,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서(17.9%)’, ‘의료시설이 좋아서(11.6%)’ 등 민간 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그림 2〉 참조)
- 한편 병사가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26.1%)’, ‘군의원 및 간부의 권유(14.7%)’ 등으로 나타함(〈그림 3〉 참조)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군 병원 이용 시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응답은 18.4%에 불과한 반면, 대기시간(37.0%), 진료예약(12.0%), 진료수준(11.2%), 열악한 시설 및 장비(8.1%) 등에서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5) 병사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 현황 및 인식 조사를 위해 2019년 5월 ~ 7월 동안 국방부의 협조 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림 2〉 현역병의 민영 의료기관 이용 이유



주: 총 363명 응답함

〈그림 3〉 현역병의 군 의료기관 이용 이유



주: 총 756명 응답함

나. 단체보험 운영 현황

■ 국방부에서는 직업군인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최저가 입찰제도를 통해 선정된 보험회사 권소사업⁶⁾을 통해 운영되며, 주요 보장 내용은 질병·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암·급성심근·뇌졸중 진단금 및 입원 일당, 실손의료비(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3대 비급여) 등임(〈표 3〉 참조)
 - 가입 대상은 하사 이상의 현역 간부,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임⁷⁾
- 가입대상자 중 기존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국방복지포털을 통해 중복가입 제외신청을 한 경우 실손의료비 보장 가입에서 제외됨

〈표 3〉 직업군인 단체보험 보장내용(2018년)

보장 담보	가입금액	보장 담보	가입금액
사망·후유장애 (상해, 질병)	1억 원	입원의료비 (상해, 질병)	3천만 원
진단비 (암, 심근경색, 뇌졸중)	1천만 원	통원의료비 (상해, 질병)	15만 원(외래 10, 처방조제 5)
입원일당	2만 원	3대 비급여	9백만 원

주: 1.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는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자녀 가입이 가능함
 2. 주황색 네모 표시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영역임
 3. 3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만 원/비급여주사료250만 원/MRI, MRA 300만 원 한도

■ 최근 성남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⁸⁾에 근거하여 군복무 병사 대상의 단체보험을 운영 중에 있으나, 주요 보장 내용은 질병·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진단금 및 입원 일당 등으로 실손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음

6) 2019년 운영회사: KB손해보험(간사), 삼성화재, DGB생명, ABL생명, 하나생명 등 5개사임

7) 가입대상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중 선택자(무기계약직의 가족은 제외), 기간 중 신규입관(용)자 본인, 연수 중인 5급 공채자, 임용 전 후보생, 병역 및 법정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는 제외함

8) 『성남시 군인영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2017),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2018), 『서울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마련(2019. 4. 6. 발의)

3.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및 고려 사항



- 본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및 고려 사항을 가입 대상, 상품구조, 운영 방안, 등으로 소개함

가. 도입 방안

- (가입 대상)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및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함(2020년 기준 371,992명)⁹⁾
 - 다만, 입영부대 도착시점부터 보험이 개시되도록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입소장정 신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장정은 군에 입대했으나 정식으로 군번을 받지 않은 자로, 육군의 경우 입대일 자정부터 이등병 계급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입소장정부터 군 복무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입소장정 중 신체 검사 결과 등에 따라 귀가 조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대상 변동분을 사후 정산함
- (보장 범위) 국방부에서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제도를 자체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함(표 4) 참조
 -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중복 보상의 불필요성 우려를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의 보장가입금액의 상향 필요성을 검토함
 - 현역병 사망보상제도(백만 원): 전사(301), 특수직무순직(231), 순직(127)
 - 병사 군 단체보험의 통원의료비 보장 수준을 현행 개인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외래의료비 25만 원, 처방조제의료비 5만 원으로 맞추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경우 예산문제로 인해 2009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외래 10만 원, 처방조제 5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음
 - 또한,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실손의료보험보다 협소할 경우, 기존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의 불만 혹은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음

9) 현역병: 2020년 356,000명 → 2021년 331,000명 → 2022년 301,000명
 상근예비역 : 2020~2022년 15,992명 → 2023~2024년 7,500명

〈표 4〉 국방부의 현역병 대상 사망 보상제도

전사	특수직무 순직 ²⁾	순직	일반사망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57.7배 ¹⁾ (301백만 원)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44.2배 (231백만 원)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1.0.42 × 23.4배 (124백만 원)	전우사랑위로금 (100백만 원)

주: 1. 2018년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522만 원
2. 2010년 8월 16일 신선헌(천안함 한주호준위 사건 계기)

■ (위험률) 현재 병사에 대한 경험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병사 전용의 위험률 산출은 쉽지 않아 보이므로,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 대상 위험률에 군인 특성 요소를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함

- 일반 ‘남자, 병사 평균 연령, 상해 2급’ 기준 요율¹⁰⁾을 사용하되, 국방부에서 계약시점의 예상 평균 연령을 제공함
 - 계약 후 가입 대상 명단을 수령하여 평균 연령 및 보험료를 조정·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함
- 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 병원 이용의 예상 증가율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면책 사항) 직업군인 단체보험 면책 사항¹¹⁾ 중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은 보상하는 항목으로 편입함

- 국지 교전(서해교전 등)이나 내전은 면책 사항인 전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장 범위를 약관상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
- 특수운동 및 특수운전의 경우 군 복무 활동과 관련되므로 보상 항목으로 편입하고, 전체 대상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반영함
 - 현재 직업군인 단체보험(실손의료보험)에서 군장비 운전(탱크, 군용트럭, 특수장갑차 등) 및 무기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면책 사항 아님
 - 특수운동 및 특수운전의 경우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3대비급여 등의 담보에 대해 보험회사별로 경험통계에 기반하여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음
- 직무상 선박탑승의 경우 보상하는 항목으로 편입하되, 해당 병사 대상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할증함¹²⁾

10) 직업군인 단체보험 및 지자체 단체보험의 요율 기준을 참고함

11) 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②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④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⑤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기타 직무상 선박탑승

12) 직무상 선박탑승의 경우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3대 비급여 등에 대해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할증률은 특수운동 및 특수운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운영 방안)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 매년 입찰방식 통해 입찰에 응모한 보험회사 컨소시엄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함

-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가입 대상은 국방부와 운영기관 간 계약시점의 병사(현역병 및 상근예비역)로 함
 - 보험기간을 현역병별 복무기간(현역병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으로 할 경우, 입찰방식에 따른 운영기관 선정이 불가능하고, 이외에 운영 방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¹³⁾
- 보험 효력은 병사 본인이 훈련소(신병교육대) 입소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 24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함
 -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회사와 운영기관 간 계약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호 인원 변동자들에 대한 정산 처리를 실시함

나. 고려 사항

■ 병사 군 단체보험제도 시행 전에 보험업권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입찰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장 확장특약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권의 보험약관 개정 작업 및 선박 할증률 미보유 회사의 경우 관련 할증률 마련 등이 필요함
- 또한, 금융감독원의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병사 군 단체보험 관련 상품 및 입찰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 3~6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국방부는 보험회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에 협력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음

■ 향후 민간 병원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병사 전용의 단체요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 병사 전용의 단체요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도입 단계부터 위험률 산출을 염두에 둔 경험통계의 데이터베이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군 의료기관 진료 통계, 심사평가원의 민영 의료기관 진료 통계, 운영기관(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 통계 등을 활용하여,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의뢰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3) 피보험자인 현역병 입장에서는 운영기관별로 보험기간이 최소 1개월~최대 1년이 적용됨

4.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에 따른 예상 보험료 및 예산 소요액

-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 9,000원에서 최대 9만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됨(〈표 5〉 참조)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 및 면책 사항 보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고려할 때, 일반 병사의 연간 보험료는 6만 4,000원, 직무상 선박 탑승 현역병의 경우 9만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됨

〈표 5〉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에 따른 연간 예상 보험료

구 분	통원의료비(외래)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일반 병사	59,720원	61,970원	63,320원	64,250원
직무상 선박탑승 병사	91,890원	95,090원	97,000원	98,290원

주: 1. 입원의료비(상해·질병): 3,000만 원, 통원의료비(처방조제): 5만 원, 3대 비급여: 900만 원
2. K보험회사 남자 21세 상해 2급 위험률 및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함

-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연간 예산 소요액은 최소 78억 원에서 최대 24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됨(〈표 6〉 참조)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으로 병사 중 87%(실손 가입자 중 80%)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연간 예산 소요액은 209억 원 수준으로 산출됨 **kiri**

〈표 6〉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에 따른 연간 예산 소요액

기 준		통원의료비(외래)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전체 병사대상 *실손 가입자 중지 신청 권고		223.6	232.0	237.0	240.5
실손 가입자 중 희망 병사대상 (실손 가입자 중 중지 신청 비중)	90%	209.0	216.9	221.6	224.9
	80%	194.5	201.8	206.2	209.2
	70%	180.0	186.7	190.8	193.6
	50%	150.9	156.6	160.0	162.3
실손 미가입 병사 대상 *실손 가입자 유지		78.3	81.2	83.0	84.2

주: 1. 입원의료비(상해·질병): 3,000만 원, 통원의료비(처방조제): 5만 원, 3대 비급여: 900만 원
2. K보험회사 남자 21세 상해 2급 위험률 및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함
3. 남자 21세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률 65%(2017년 기준)를 적용함
4. 전체 병사 중 직무상 선박탑승 병사 비중은 1.2%(2019년 기준)을 적용함¹⁴⁾

14) 2019년 현재 병사 중 직무상 선박탑승인원은 4,420명(육군 239, 해군 4,100, 공군 81)으로, 2020년에도 선박탑승인원 비중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병사 371,992명 중 1.2%에 해당됨